



# CONTENTS

KOSCA LETTER Vol.2

코스카레터 제2호 가을호



## PART1



2014년 Vol. 02 가을호

---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

1. 축사 ..... 04

- 서병수 \_ 부산광역시장
- 이해동 \_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김석준 \_ 부산광역시교육감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소개 ..... 07

- 무성토건(주) 김종한



## PART3

12. 전문건설인의 삶	36
• 건설인 1호 이소영 _ 삼지건설(주) 회장	
• 건설인 2호 김병철 _ (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	
13. 건설산업정보 - Part 1	40
14. SPECIAL05 - 소통하는 문화공간	50
15. 건설산업정보 - Part 2	52
16. SPECIAL06 - 업무단신+4/4분기 주요일정	59
17.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60
18. 회원사 질의응답	62
19. 특별기고	64
• 이학기 _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박민용 _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교수	
20. SPECIAL07 - 그것이 알고싶다	68

## PART4

21. 회원사 현황	70
22.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71
23. 신규회원 가입업체 소개	72
24. SPECIAL08 - 쉬어가는 유머	74
25.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76
26. 회원사 참여 마당	78
27. 협회 제휴카드 소개	79

# 01

## 축 사 MESSAGE

“전문건설인들의 ‘소통광장’ 코스카레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 경제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전문건설인 여러분  
들의 그 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축, 국내 SOC사업 감축, 부동산 경기침체 등 건설  
산업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산시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 실  
적이 2013년 전년대비 5.9% 증가하는 등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  
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건설인들이 눈앞의 난관에 굴하지 않고 끊  
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관련 건설업계 및 지자체와 상생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민선6기 출범과 아울러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으로 도시비전을 설정하고, 일자리 도시, 안전한  
생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도시의 안전 및 발전이 이루어진다  
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건축, 도로, 하천 등 모든 공사에 혼을  
담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산시도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지역건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책발굴 등 적극적  
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귀 협회도 부산시를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안전한 생활도시로 만  
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산지역 전문건설인들의 열린 공간, 참여 광장이 될  
코스카레터 발간을 축하드리며, 건설인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병 수  
부산광역시장



message

# 01

## 축사 MESSAGE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둔화, 국내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라는 도전적인 경영 환경 아래서 우리의 전문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꿈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코스카레터』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이러한 고민을 가장 건설 인다운 방식으로 제시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상태에 놓여 있어 건설기술자와 구직난과 연관 산업으로까지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건설산업이 나아 가야할 방향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인들의 DNA 속에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굴의 투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스스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성장위주의 구조였던 건설산업을 이제는 창조적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새로운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고,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는 지도 대신 나침반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막 지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결 같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코스카레터』가 바로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앞길을 환히 비춰주는 믿음직한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건설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코스카레터』가 소통과 화합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01

## 축 사 MESSAGE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소식지  
‘코스카레터’ 제2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힘든 여건 속에서도 1,600여 회원사의 권익과 새로운 건설문화 형성을 위해 소식지 발간에 최선을 다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1985년 창립 이후로 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권익 증진에 힘쓰며, 건설 산업관련 제도 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해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진전한 육성발전과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도 건설인 여러분이 단결하여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카레터’는 지난 창간호에서 전문건설관련 기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정보를 비롯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회원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건설사들이 한곳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세상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문 소식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코스카레터’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화려한 소식지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신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건설인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발간까지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가정의 행복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전문건설업계를 대변할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 김종한

##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선

Congratulations on your victory

### 시민과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한마디!

먼저, 당선의 영광을 안겨준 시민분들과 부산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계의 대외 위상제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 부산지역 대형 건설현장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숙원사업인 주계약공동도급 발주가 부산에서 정착되어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리며,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 어제보다 새로운 부산,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 JONGHAN



## 협회 소식

### 제회의

#### 운영위원회의

우리시회는 5월 13일(10:30 /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운영위원 및 회원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회 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제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제22회 부산·광주 합동 연수회 개최 계획(안) 및 협회 주요 운영방침에 대하여 보고하고, 협회 주요 당면현안 등을 협의하였다.



#### 회장단 회의

우리시회는 7월 3일과 9월 17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협회 주요일정과 제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우리시회 자체포상심사기준, 제2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 및 산업시찰 행사와 전문건설인 제2회 산행 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 업종별 운영분과위원회의

우리시회는 7월 24일(10:00 / 우리시회 회장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 업종에 대하여 운영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0대 대표회원 보궐선출(추천)의 건을 의결하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대표회원 2명((주)인산건업 대표이사 하진근, (주)테크유니온 대표이사 신유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표회원 2명((주)덕재건설 대표이사 김운석, 야후건설(주) 대표이사 김병흠), 포장공사업 대표회원 2명((주)동궁건설 대표이사 하태칠, (주)복민건설 대표이사 황규진)을 선출하였다.

### 제위원회의

〈제3차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의〉



우리사회는 7월 24일(11:00 / 포항횟집) 제3차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의(위원장 최상대)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철 회장은((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 이사) 1,000만원을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 운영기금으로 기부하였으며, 세월호성금 전달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 무상급식 성금 전달 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불우이웃 주거환경 리모델링 사업 및 독거노인가정 연탄(기부)배달사업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등을 협의했다.

〈제3차 기획혁신 및 고충(애로)해결위원회의〉



우리사회는 8월 2일(11:00 / 포항횟집) 제3차 기획혁신(위원장 김경식) 및 고충(애로)해결위원회의(위원장 정석봉)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각종 행사별 세부내용은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하기로하고, 차기회의에서부터 지정된 안건을 주제로 협의, 자문하기로 결정하였다.

## 협회 소식

### 제행사

#### 2014 건설의 날 기념식

'2014 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가 6월 18일 (15:00 / 서울 건설회관) 유관단체 및 업계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시회 김병철 회장((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전문건설업체 대표 29명이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했다.



김병철 대표는 '행복경영', '기술경영',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가는 기업의 CEO로서 내부적으로 경영의 내실화와 함께 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건의 건설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등 건설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술의 보급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총 활용실적 979건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173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중소건설기업으로서 드물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54건의 특허와 2건의 녹색기술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에 이르기까지 국가기술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해 건물의 전기에너지 사용 총량 중 20~25%를 차지하는 조명에너지의 대체 제품인 친환경태양광조명을 개발 및 생산보급해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여와 봉사로 사회적 행복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공존의 가치를 기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실천해 왔다. 기업 이익의 40%는 기업성장 발전을 위한 재투자로, 30%는 주주배당으로, 20%는 직원배당으로, 10%는 사회에 환원하는 공식을 지켜오는 등 직원과 회사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한 '으뜸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제22회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코스카(KOSCA) 부산시회(회장 김병철)와 광주시회(회장 송성홍)는 6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양 시회 대표회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합동 연수회는 93년 10월 영·호남 전문건설인의 상호 신뢰와 화합을 도모코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주 양 시회가 친선교류 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상호 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져오면서,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참석자들은 순천낙안읍성민속마을과 송광사, 순천정원박람회장을 돌아보며 상호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및 산업시찰

〈제1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우리사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사의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6월 24일 (07:00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회원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때이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 회원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이학기 교수의 '건설산업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2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및 산업시찰〉

우리사회는 9월 19일 (07:00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포항 포스코제철소) 전문건설업의 위기극복과 산업시설의 견학을 통해 안목을 넓혀 회원사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 및 산업시찰을 개최했다.

회원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나성린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였으며, 포항 포스코 제철소 및 경주 일원 등 산업시찰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재도약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협회 소식

### 강습회 및 워크숍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무관계자 민·관합동 워크숍



우리시회는 부산광역시와 협동으로 7월 7일(14:00 / 그린나래호텔 2층 카멜리아홀(해운대 우동 소재))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방재관 등 부산지역 20여개 발주기관의 계약·감독·건설행정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무 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 지원과 업역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방재관은 워크숍에 참석한 건설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부산전문건설업체 수주 지원 등을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설하도급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설 하도급분야 문제점, 경제민주화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강의가 있었다.

#### 개정 건설관련 법령 부산시회 순회 설명회

우리시회는 8월 26일(14:0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건설관련 법령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건설관계법령, 건설기술 및 노동관계법령, 건설업관리규정 및 시공 능력평가 등에 대하여 우리협회 중앙회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회원사의 전문건설업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 간담회

###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국장 간담회

우리사회 회장단 및 사회적책임경영위원장은 7월 30일(12:00)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철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과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은 "부산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간담회

우리사회 회장단 및 감사, 운영위원 등 10여명은 9월 1일 부산광역시장실을 방문하여 서병수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지역 내 대형 건설현장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부산시회가 건의한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보다 많은 지역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도 부실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협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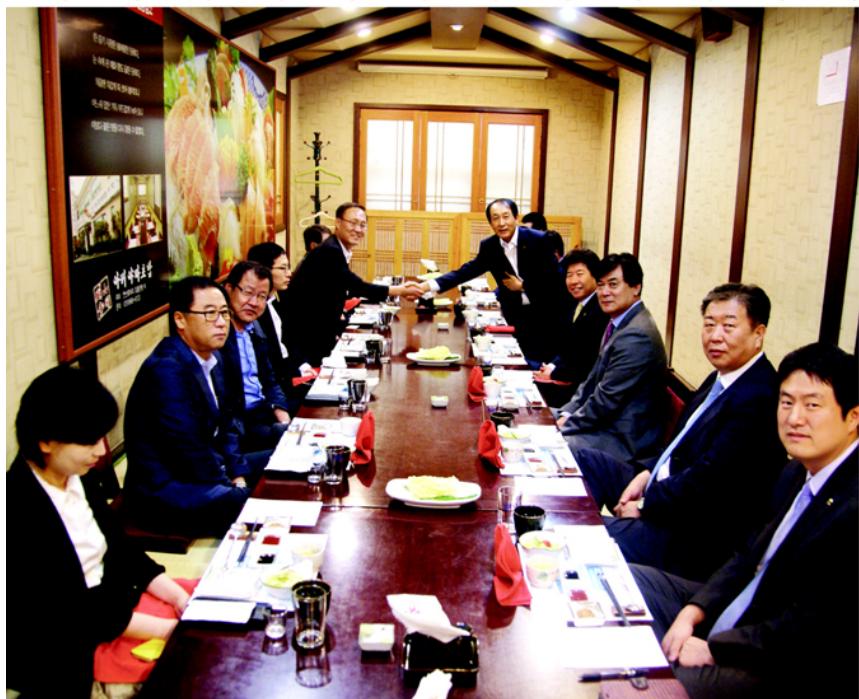


### 2014년도 상반기 신규회원 간담회

우리시회는 9월 2일(11:00 / 서면 골든부 뷔페) '2014년도 상반기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의 역할과 전반적인 건설산업제도 소개, 그리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신고사항 등을 설명하고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협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 언론사 간담회

우리시회는 9월 17일, 18일 양일간 언론사 담당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철 회장은 "회원사 대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의 갑관계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하도급 거래를 둘러싸고 일부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간담회

우리시회 회장단 및 사회적책임경영위원장은 2014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철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를 확대하여 줄 것과 함께 설계 변경시 관련내용을 하도급자에게도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김종철 건설본부장은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이행과 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며,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도 불법재하도급 근절 등 자생력을 키워달라"고 했다.

## 의료업무 협약 병원 소개

우리사회에서는 2013년부터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신속한 산재사고 처리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부산지역 의료기관과 상호 공동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의료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전문건설인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의료기관별 지원혜택 현황 〉

구 분	온종합병원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위 치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진구 당감동</li> <li>2호선 부암역 6번출구 (T.051-607-01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구 대연1동</li> <li>2호선 대연역 1번출구 (T.051-930-31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구 남천동</li> <li>2호선 금련산역 4번출구 (T.051-610-9972)</li> </ul>
외래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부담금의 1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부담금의 1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위료부분 10% 할인 (본인부담금)</li> </ul>
입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급여진료비의 1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급여진료비의 1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위료부분 10% 할인</li> <li>상급병실차액 10% 할인</li> </ul>
종합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검진 2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검진 2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검진 20% 할인 (비수기 1, 2월은 30% 할인)</li> </ul>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례식장 30% 할인</li> <li>장의용품 20% 할인</li> <li>도우미 20시간 무료</li> <li>운구료 무료</li> <li>상조보험 이용시 빈소 사용료 1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례식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소임대료 10% 할인</li> <li>장의용품 사용시 장의용품, 빈소임대료 20% 할인</li> </ul>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또는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 05

## 회원소식

### 업종별 분과모임

우리시회는 업종별 업계가 체감하는 구체적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과 업종별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회원사 분과모임에 참석했다.



토공사업 분과회의



포장공사업 분과회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분과회의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분과회의



### 부산전문건설인 산행

우리시회는 9월 25일 부산 전문건설인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2014년 제2차 단합산행을 개최하였다.

이날 산행은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을 출발하여 달맞이길을 거쳐 폐선철길 구간에서 구덕포로 이어지는 문탠로드를 걸었으며, 참석한 회원사들은 가을의 정취와 함께 회원사 상호간 우의를 다지며, 협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전건회 9월 월례회

우리시회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건회(전문건설골프회)에서는 9월 26일(06:35 / 베이사이드 골프클럽)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월례회에서 김병철 회장은 골프경기 결과에 따른 메달리스트((주)금광이엔지 대표 오동진), 우승자(주)진성디이 대표 박철훈) 등에 부상을 전달하였으며, 소속 회원사들과 협회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전건회 소개

회원 상호간의 건설정보, 전문건설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친목도모 및 심신단련으로 기업경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상호협력에 목적을 가진 전문건설인 친목모임이며,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우리시회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현재 소속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가입문의 : 전건회 총무 –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 051-202-6111)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함께하는 한끼의식사기금 사랑나눔음악회 개최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전문건설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의 유일한 국제구호단체인 한끼의식사기금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MOU를 체결하고, 부산 1,600여 전문건설인의 대외위상 제고를 위해 부산지역 발주기관 주요인사와 회원사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창립 10주년**  
**한끼의식사기금 사랑나눔음악회**  
with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가수 김세환  
비아울린 백재진 /  
스프리노 이윤정 /  
태 너 이칠성

플룻 이상창 /  
피아노 공소현

**세사정 김세환 &  
클래식 음악여행**

2014.11.6(목) 오후 7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주관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8세이상 아동관람)  
예매·문의 ☎ 1544-1555 ☎ 051-780-6000 ☎ 전지점 051-620-3510 ☎ ☎ 051-631-7741 ☎ ☎ 051-633-0260

## 사회공헌활동

### 부산전문건설협회 & 한끼의식사기금 사회공헌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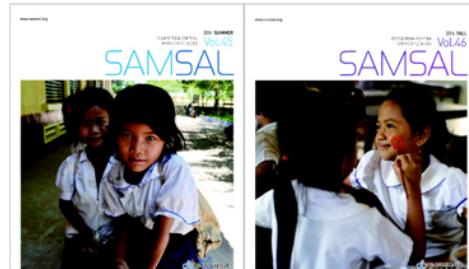
우리사회는 5월 27일(11:40 /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사)한끼의식사기금(이사장 윤경일)과 지역사회공헌 지원방안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분야(인적 / 기술 /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회책임경영과 봉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병철 회장은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책임과 윤리의식은 기업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며 협회가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기관과 교류·협력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경일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부산전문건설협회와의 후원 MOU체결을 통하여 부산지역 구호사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우리사회에서는 행복한 지구촌 건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끼식사기금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역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끼의식사기금 소식지(SAMSAL)을 계속 구독을 원하시거나 작은 기부(₩10,000이상)에 함께 동참 하실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협회 (Tel. 051-633-0260) 또는 한끼의식사기금 (Tel. 051-731-7741)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끼의식사기금의 주요사업

#### • 식량지원사업

열악한 가정환경과 빈곤으로 인해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능력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식량을 지원

- FFE(Food For Education) : 교육동기 유발위한 오지지역 학생들 식량지원
- FFW(Food For Work) : 오지마을의 도로 및 다리건설, 환경개선 등에 노동력을 활용하고 식량지원

#### • 교육지원사업

빈민층 아동, 청소년,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한 잠재력 발달 및 자립의 기회를 제공

- 보편적 초등교육 기회 제공
- 아동 및 청소년 영양간식 제공
- 학교, 도서관, 놀이터 건축
- 교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자활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

#### • 보건의료사업

보건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해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지원

- 보건위생교육 실시
- 극빈층 및 장애아동 의료지원
- 해외의료봉사활동

#### •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총체적인 개발사업

- 도로, 다리, 우물, 화장실 설치
- 농업지원 및 가축분양사업

#### • 긴급구호사업

전쟁과 자연 재해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 활동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

- 의료지원 및 물품지원

#### • 국내구호사업

국내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를 위한 지원사업

-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 07

## 사회공헌활동

### 세월호 성금 모금 및 기탁

우리시회는 7월 28일(10:30 / 전문건설회관 4층 회장실) 118개 회원사와 사무처 직원들이 세월호 사고 의사자 및 희생자 유가족을 돋기 위하여 모금한 성금 금10,708,110원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김병철 회장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실종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하루빨리 슬픔에서 벗어나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에서 모은 성금이 이들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세월호 사고관련 성금 모금 참여 회원사

(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이사 김병철,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정석봉,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사 김세원, (주)성덕건설 대표이사 김경식, 영빈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진,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 거원건설(주) 대표이사 이운용, 이순호, (주)거촌건설 대표이사 이상록, (주)건양산업 대표이사 정종원, 건진개발(주) 대표이사 심수율, 경남종합조경 대표 송유경, 경복개발(주) 대표이사 임복근, 광민건설(주) 대표이사 최형선, (주)국도건설 대표이사 주성락, (주)국일에스에프건설 대표이사 이기덕, (주)금맥공영 대표이사 김정조, (주)금원건설 대표이사 정영군, (주)금하수도 대표이사 김은주, (주)금호창호 대표이사 윤석균, (주)남도말물 대표이사 김세동, (주)다담건설 대표이사 김옥경, 다산건설(주) 대표이사 김형묵, (주)대도산업 대표이사 진일수, 대미건설(주) 대표이사 노진석, 대승건설(주) 대표이사 황태규, (주)대영디앤비건설 대표이사 이동준, (주)대왕석재 대표이사 양정식, (주)대원산업개발 대표이사 강승구, (주)대정이엔씨 대표이사 김미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미장방수조적공사업부과회, (주)덕재건설 대표이사 김운석, 동림건설(주) 대표이사 최문학, (주)동명도장 대표이사 안형필, (주)동서에코라인 대표이사 장영기, 동신창호 대표 이기호, (주)동아개발 대표이사 김종현, (주)동아피앤씨 대표이사 홍종욱, 동진토건(주) 대표이사 김재원, (주)두로건설 대표이사 윤종길, (주)라이프하우징 대표이사 이형민,

(주)라인그룹 대표이사 김원봉, 명작건설(주) 대표이사 박정구,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김종한, 부명건설(주) 대표이사 김용석, 부명기업(주) 대표이사 김용석, 산양건설(주) 대표이사 정진갑,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김점식,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 서연건설(주) 대표이사 황경숙, (주)성신창업 대표이사 김홍수, 성훈건설(주) 대표이사 김칠훈, (주)세신이엔씨 대표이사 김종대, (주)세학하우징 대표이사 윤태율, 수영석재산업(주) 대표이사 문기찬, (주)수진건설 대표이사 김상욱, 신기개발(주) 대표이사 박순보, (주)신신건설 대표이사 김영수, 신양아이엔지건설(주) 대표이사 강동훈, (주)아이투디자인 대표이사 김종철, 에스엔케이건설(주) 대표이사 김장우, 에이엔건설(주) 대표이사 박동수, (주)에이탑이엔지 대표이사 정진철, (주)엔텍건설 대표이사 나영찬, (주)엠지건설 대표이사 유창태, (주)연동 대표이사 반백철, (주)영주 대표이사 정태환, 옥산건설(주) 대표이사 유재봉, (주)용광사 대표이사 김원호, (주)우리건설산업 대표이사 정용덕, (주)우상건축디자인 대표이사 정태호,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이사 최상대, (주)원산토건 대표이사 전병우, (주)원태건설 대표이사 지미선, 원토건설(주) 대표이사 김순애, (주)유진기업 대표이사 추태석, 은산건설(주) 대표이사 박병길, (주)이화종합건설 대표이사 곽영길, (주)인산건설 대표이사 하진근, 장원엔지니어링 대표 백이승, 제일안전개발 대표 김종학, (주)준석 대표이사 이규주, (주)중부건설 대표이사 김석태, 중앙건설(주) 대표이사 민환기,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겸, 김영문, (주)자엔시 대표이사 전용후, (주)창도환경 대표이사 박춘생, 천지개발(주) 대표이사 임철규, (주)청산산업 대표이사 강성구, 청우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황주경, (주)청우이엔지 대표이사 김종민, (주)초원개발 대표이사 장기봉, (주)카포산업 대표이사 박종섭, 태영건설(주) 대표이사 박판웅, (주)통영산업건설 대표이사 강재준, 한국리이텍개발(주) 대표이사 황성도, 한국울타리공업(주) 대표이사 정승모, 한성기업(주) 대표이사 정동섭, 한솔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 정현호, (주)한수유니텍 대표이사 손영규, (주)해신석재 대표이사 조영철, (주)해원건설산업 대표이사 강안희, 해진건설(주) 대표이사 이상호, (주)현대금속 대표이사 이종덕, (주)호승원스피아 대표이사 김찬복, (주)화성건설 대표이사 변용규, 화성포장건설(주) 대표이사 노대환, 화신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어경선, (주)흥림건설 대표이사 강갑균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교육만족 프로젝트 지원

우리사회 회장단 및 사회적책임경영위원장은 7월 29일 (10:00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 부산시 교육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금 2천만원을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또한, 어려운 학생을 돋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학생을 추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우리사회 김병철 회장은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3억원 미만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 전문공사 설계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자 적용 확대 관련 의견 제출

#### 4대 사회보험 업무간소화 및 사후정산 대상공사 확대 건의

우리사회는 4월 17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 건강·연금보험의 사업장 적용신고를 일원화하여 4대 사회보험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잊은 입·퇴사 등 건설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후정산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받고, 건설업체 기준으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하여 줄 것 등을 함께 건의했다.

### 2014년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 중앙1군 대형종합건설업체 협력업체 등록 추진 부산광역시에 부산지역 우수전문건설업체 현황 안내

우리사회는 4월 24일 부산광역시에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부산전문건설업체 446개사에 대해 중앙1군 대형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중앙1군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들에 대한 추천서를 배부하고 협력업체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 〈업종별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현황〉

(기준일자 : 2014. 4. 11)

업종	업체수	추천업체수	업종	업체수	추천업체수
실내건축공사업	269	54	철도·궤도공사업	1	1
토공사업	216	44	포장공사업	97	20
미장·방수·조적공사업	120	24	수중공사업	45	9
석공사업	34	7	조경식재공사업	143	29
도장공사업	106	2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02	2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20	24	강구조물공사업	31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237	48	철강재설치공사업	3	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37	8	준설공사업	11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13	63	승강기설치공사업	27	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15	43	합 계	2,183	446
보링·그라우팅공사업	56	12			

※ 추천기준 : 우리사회 회원사 중 2013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이내 업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중인 자와 당좌거래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교육규제 개혁 관련 개선 건의

###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전문공사 100억원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등 건의

우리시회는 5월 12일 2014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자침서 개정으로 부산시의 경우 추정 가격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설계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해 줄 것과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유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건의

###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줘야...

우리시회는 5월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를 한 경우 부실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부득이하게 공사대금을 주택 등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1년 내의 기간으로 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시 가설건축물의 사무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특례를 적용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인정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수첩에 해당내용을 기재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 부산지역 건설공사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 부산건설자재 생산업체 및 장비 임대업체 동반 성장, 부산 건설근로자 고용창출 등 방안 마련 추진

우리시회는 5월 22일 그동안 부산지역의 대형건설공사를 서울 등 외지 건설업체가 도급받아 그들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어 부산지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 및 시공사에 건의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의견 제출

#### 부당특약의 무효, 대물변제의 금지사유 명시화

#### 부산시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건의

우리시회는 5월 29일 원사업자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시 건설관계법령을 우선 적용 토록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부당특약 설정 무효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등의 내용을 명시화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

####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점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실태 점검 강화

우리시회는 5월 29일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통보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와 특수계약조건 점검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 유무를 점검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관련 설문조사 실시

#### 적정공사비 및 채산성 확보, 시공품질 향상 등 많은 효과...

#### 낮은 설계단가, 주·부계약자 설계내역 구분 등은 개선되어야....

우리시회는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부산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에 부계약자로 참여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중앙회에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가 주계약자 공동도급공사가 기존 하도급공사와 비교해 10 ~ 15%이상 적정공사비가 확보되고, 이중 70% 이상은 적정공사비 확보로 공사품질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채산성(이윤)은 기존 하도급 공사에 비해 평균 3.5% 이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낮은 설계단가, △주계약자, 부계약자의 각자 시공물량 불명확,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착공·준공일자 별도 구분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지역 건설현장 민관 합동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참여율 및 부당특약 설정 점검

우리시회는 6월, 8월 2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부산지역 20여개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부조리 및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일부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청하고, 향후 투입공종에 대해서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 국세행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

###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 건의

우리시회는 6월 12일 회원사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은 공사대금 운용을 위해 다시 매도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과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협조 요청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회원사 건설공사 수주지원 위해 해운대 엘시티 조성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협조

우리사회는 6월 23일 (주)엘시티PFV 시행으로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가 시공하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엘시티 조성공사」에 보다 많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전문건설사들이 글로벌 랜드마크로 탄생하게 될 해운대 관광리조트 엘시티의 시공사로 선정된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의 협력업체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우수한 기술과 시공능력을 배양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와 장비가 사용된다면 동반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공사 설계시 국내 생산자재 설계반영 협조 요청

#### 발주자 예산절감과 향후 시설 유지보수비용 절감 위해...

우리사회는 6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에 소속 회원사가 건설공사 설계시 특정 국가의 특정 건설자재 사용을 명기하는 것은 어려운 국내 건설자재 생산 업체를 배려하지 않아 해외로 국부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 및 품질 면에서도 뛰어난 국산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발주자의 예산절감과 향후 시설 유지보수에도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건설자재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신규 고용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

### 원사업자의 건설공사 부당특약설정 금지 추진

####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설정금지 추진

우리사회에서는 7월 25일 부산지역 570여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법령을 준수하여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여 줄 것과 부산지역 주요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 설정유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발주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 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명확화 등 의견 제출

우리시회는 7월 28일 기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특례와 별도로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공표 제외 기준을 상호합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로 강화하여 줄 것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3억원 미만의 복합공사는 전문공사 발주 건의

### 회원사 건설공사 수주 확대를 위하여

### 3억원 미만의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건의

우리시회는 8월 5일 부산지역 69개 주요발주기관에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확대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서 2종류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해 줄 것을 협조요청 했다.

이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보수·보강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종합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준수로 전문건설업의 업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의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 건설업 무등록자 불법시공행위 근절 추진

###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 행위 신고해 주세요!

부산시회에서 적극 조치하여 드립니다.

우리시회는 6월 9일 부산지역 440여개 건설업무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 도급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엄격히 금지(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는 건설부조리행위에 대하여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우리시회는 8월 21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도급 행위 등 건설부조리행위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의 각 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우리시회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 자세한 신고방법 및 서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회원전용공간 ⇒ 불법·불공정행위신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협조 요청

#### 부산시회, 지역전문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 16개 구·군청에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 확대 협조

우리시회는 8월 21일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회원사 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하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보다 많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4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 이내인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안내하고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할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공사의 하자사례 파악

#### 하자원인 및 처리현황 파악후 정부 정책건의자료 활용

우리시회는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부산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에 부계 약자로 참여한 회원사 168개사를 대상으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하자사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설계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하여 발주자 및 주계약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시공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부계약자 분담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계약자에게 전적으로 하자책임을 전가한 사례가 1건 확인되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 회를 통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우리시회는 그동안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주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담당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4년 9월말 기준 부산지역에서 72건(전국 : 207건)이 발주되어 전국 16개 시·도회 중 발주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 건축물·시설물 해체공사 분리발주

####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 69곳에 협조 요청

우리시회는 9월 18일 부산지역 69개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축물·시설물 해체공사는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성격상 분리발주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를 종합공사로 일괄 발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건설 비계·구조물해체공사로 분리 발주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행정적인 절차, 관리감독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건축물·시설물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지 않으며, 원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체들은 해당 철거공사를 전문건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에게 저가로 하도급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적정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 등 조경식재공사업 발주 건의

### 건설산업기본법 및 법제처 유권해석 안내

우리시회는 10월 2일 부산광역시(푸른산림과)에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의 업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조경식재공사업체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공사는 산림사업 법인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 조경식재공사 업체도 시공자격이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있다.



### 건설기술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철저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력 등

우리시회는 10월 2일 회원사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일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등의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안내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서 건설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라 하더라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등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분야별 등급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도 인정 받을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철저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선행되야

####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 가입대상에서 제외

우리시회는 10월 17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관련하여 신규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과 함께 건설현장별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지도점검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사 소속 근로자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소급·추징하고 있으므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문서시행에서 확인 가능하다.

# 08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활용 안내 및 우수 활용사례 공모

#### 전문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건설지원정보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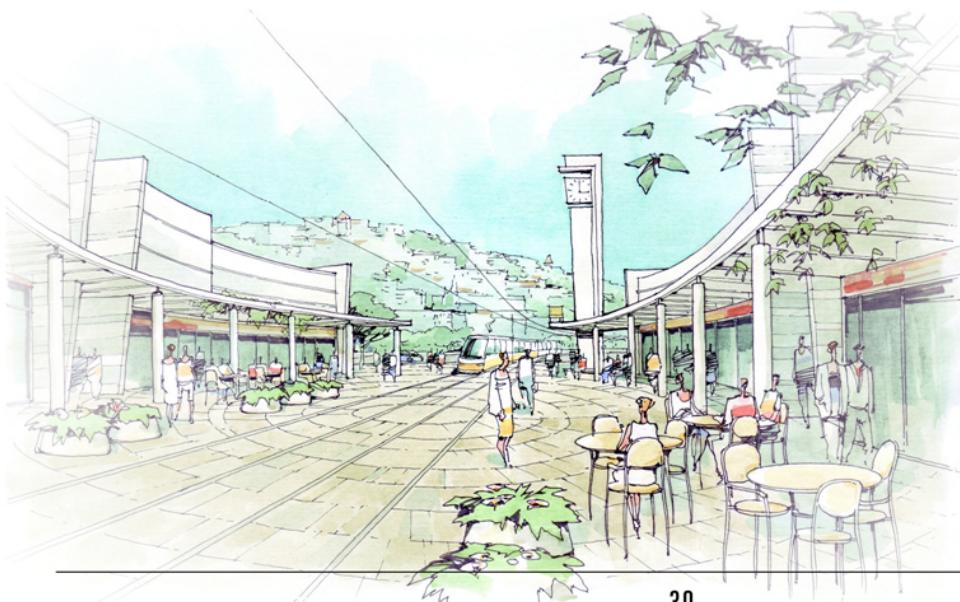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문건설 지원체계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회는 공공 발주처와 대기업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회원사의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공법·시공·설계 등의 각종 기술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분석·가공·DB화하여 건설기술정보시스템([www.codil.or.kr](http://www.codil.or.kr))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신공법, 특허기술, 해외건설공사 적용 기술 등의 기술자료를 우리시회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회 건설정책과(☎051-633-026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DB사업팀이 공동주관으로 「2014 전문건설 지원 정보 우수 활용사례」를 올해 11월 15일까지 공모한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부산시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및 수료생 취업 지원 홍보 + Special 03

구 분		제1기 모집 및 수료		제2기 모집인원	계	총원율(%)
과정별	정원	모집	수료			
건축시공	90	12	12	14	26	29
실내건축	90	22	16	27	49	54
건축설비 설계시공	90	14	12	23	37	41
특수용접	90	16	16	21	37	41
소계	360	64	56	85	149	41
야간과정	50		40		40	80



부산광역시는 **건설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국비지원으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을 건립, 부경대학교 건설기술인력양성사업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동 교육원은 2014년도 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직종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설비 설계시공, △특수용접의 총 4개 과정별 6개월 교육으로 개설되어 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각 45명씩 한 기수당 180명이며, 전액 국비지원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생에게는 매월 훈련수당과 교통비, 식대 등이 지급되며, 교육 중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교육 이수 졸업생에게는 우리시

회, 부산광역시, 부산고용센터 등에서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한편, 전반기와 후반기 년 2회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집인원에 비해 신청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능력 개발과 취업에 관심있는 건설근로자의 많은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지원해 줄 것과 동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회원사에 당부했다.

**문의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전화 :** 051)330-8101~5

**팩스 :** 051)330-8100

#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 예방법

소아과나 일반 내과는 유독 겨울 보다는 봄 가을에 환자가 넘쳐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날씨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때에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탈모, 푸석푸석 피부 건조, 결막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등의 질병도 오히려 겨울보다 봄 가을에 급증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이나 노인분들은 특별히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특히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의 건강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 가벼운 외출로 충분한 햇볕 쬐기

요즘 탁한 공기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햇볕을 받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환절기때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벼운 외출로 충분한 햇볕을 받는게 좋습니다. 바로 면역력을 향상 시키는 영양소인 비타민 D가 햇볕을 받아야 우리 몸에 생성이 되는데 비타민 D는 뼈의 건강과 독감 천식 암을 예방하는 필수 영양소 이라서 어린 아기들도 30분 정도의 햇볕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독감환자들 몸속에서 비타민 C의 농도가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비타민 C도 면역력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 C도 강력한 항산화 능력으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항바이러스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여벌옷 챙기기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체온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여벌옷을 챙기는걸 생활화 해야 합니다

더울때 가볍게 입어주고, 추울때 따뜻하게 입어 줌으로써 감기 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

환절기에는 생체리듬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이 좋습니다.

면역력 저하의 원인은 긴장과 스트레스, 그래서 잠이 부족할경 우 몸의 면역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밤 11시 부터 새벽 3시까지 깊은 숙면이 뇌속에 면역력을 높혀주는 멜라토닌이 분비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가볍게 하루 30분이상 스트레칭, 산책, 축구 등의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 골고루 음식 섭취, 야채로 비타민 보충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음식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D 외에도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면역글로불린과 라이소자임 락토페린이 들어있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은 각종 질병의 항체 작용을하고, 라시소자임은 항균 소염에 관여하고 락토페린은 유해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영양소 이라고 하니 우유의 섭취는 필수입니다.

- 피로를 예방하고 식욕 회복과 신경 불안정을 개선해 주는 비타 B1이 들어있는 연어가 좋습니다.
- 풀, 토마토등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섭취. 요즘 채식을 많이 하시지만 정작 면역력 관리는 단백질이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기관의 크기와 무게가 감소하므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을 과일의 대표주자,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여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리는 석류. 비타민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감기예방에 탁월합니다.
-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채소 당근입니다. 주황빛의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몸의 저항력을 향상 시키는데 좋습니다.
- 감기에 좋은 음식으로 대추, 도라지, 배가 대표적입니다.
  - 대추 : 동의보감에도 나온 대추, 건강을 지켜주는 보양식.
  - 도라지 : 호흡기 질환과 천식에 걸린 분들에게 효과.
  - 배 :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가래, 기침, 기관지염 등 감기치료제로도 많이 쓰임.



## 물 많이 마시기

환절기에는 덥지 않은 날씨에 물 마시는 양이 줄어듭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 되기가 쉽습니다. 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와 기관지 건조를 막을수 있으며, 미지근한 물을 마셔줌으로써 신진대사가 활발해 질수 있도록 합니다.

하루에 1.5리터 ~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 보다는 여려번 나누어서 자주 마시는게 좋습니다.

## 건조함 조심하기

가을이 되면 유독 좋았던 피부도 푸석푸석,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바로 공기의 건조함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건조할 경우, 비염, 감기,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젖은 샤워는 자제하고 샤워후 보습제 발라주고 적정 습도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전에 젖은 수건을 침대 머리위에 널어두고 자는것도 습도 유지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 청결한 주변관리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 등으로 생기는 '통년성' 경우과 가을 철 꽃가루로 인한 발생하는 '계절성'으로 나누어집니다.

평소 집안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코의 점막을 자극하여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합니다.

성장기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에 노출이되면, 제채기와 콧물을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 성장호르몬 분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겨울철 비염으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집안 청소와 청결을 위해 신경을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 신기술 소개

### 친환경 태양광 조명시스템

#### 건설신기술 제579호

다면 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 태양광 조명시스템의 효과



본 신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 친환경 생활 패턴으로의 변화 등 요구에 맞추어 (주)에이비엠그린텍에서 3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로써, 무궁무진한 태양의 빛을 실내에 조명화하는 기술이다.

특히 국내 위도에 따른 태양의 수광시간과 굽절각도를 고려한다면 형상의 프리즘 패널을 통해 빛을 받아들인 후, 이 빛을 광덕트 내부의 반사를 통해 실내로 조사하여 인공 조명(형광등)을 대체하게 된다.

신기술은 기존 기술대비 약 2·3배의 효율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산란광 (흐린 날, 비오는 날 등) 하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내구성 및 내환경성 등이 검증된 구조물을 사용함과 동시에 모듈화소형화되어 유지관리 및 시공이 편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조명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의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대실자들의 생산성 및 학습능력 향상, 비타민 D 생성을 통한 질병치료 및 예방, 살균 및 탈취 효과 등의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 채 봉  
(주)에이비엠그린텍  
기술연구소 소장



본 기술의 우수성으로 건설신기술 제579호뿐 아니라 녹색 기술(제GT-10-00095호),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12-162호), 조달청 우수제품(제2009251호) 등의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LNH공사 녹색기자재 공모전 금상 수상, 토목학회 대상 등 다수의 제품 인증 및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 신기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0개소 현장에 설치되어, 인공 조명에너지 절감 및 다양한 효용성에 대하여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주)에이비엠그린텍 기술연구소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사용처별 제품 형상 다변화 및 주제식 제품 추가개발로 사무실용, 가정용, 산업용 등 태양광 조명시스템 제품 풀라인 업을 확충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으로 태양광 조명시스템 분야 국내 유일의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를 향한 강소기업으로서의 성장할 비전을 실현중이다.

## 미래를 만드는 기업 삼지건설(주)



이 소 영  
삼지건설(주) 회장



**빛나는 눈빛, 빛나는 삶.**

– 완벽에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이 가져다준 행복.

"SAMJI"라는 글자가 박힌 가슴팍의 배지가 눈에 들어온다.

건설인 2호의 인터뷰를 위해 처음 만난 이소영 회장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삼지"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명함도 받기 전에 배지에 대해 물었다.

"이것은 곧 나의 인생입니다." 자신이 꾸려온 인생을 가슴에 달고 당당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것. 삼지건설(주)에 대한 그의 자신감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온전히 전해졌다.

104세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신 노모와 회 한 접시에 소주한잔 즐기는 것을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이소영 회장.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좋은 피(?) 덕분인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보이는 얼굴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희끗한 머리카락이 까만 눈동자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눈빛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이것이 그의 첫 느낌이었다.

### 성공의 이유가 있다. – 신뢰

이야기는 1968년 건설업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화폐개혁 후 단돈 100원이 하루 임금이던 시절, 남해에서 태어나 먹고 살 것도, 배운 것도 없는 한 남자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현장기사들의 안전모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 별다른 기술도, 학력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것뿐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던 삶이 계속될 때쯤 "나도 건설회사 사장 한번 못해볼까"라는 결심같은 목표가 생겼다. 그렇게 (주)신흥건설 기

술이사를 거쳐 (주)정림개발 공동대표를 지나 1992년, 20여년 만에 (주)삼지건설을 창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다. 20여년 전에 어렴풋이 한 결심이 이루어진 날, 그는 또 한가지 결심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뢰를 지키자.'

지금까지 한번도 인부들의 노임이나 협력업체에게 지불할 대금결제를 하루도 미룬 적이 없을 정도로 한번 한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고야 마는 성품 때문인지, 작은 것에서부터 채워진 신용이 IMF 때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린 힘이 되었다.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지키는 신뢰가 지금 까지 그와 삼지건설(주)을 지탱하는 힘이 된 것이다.

### 성공의 이유가 있다. – 철두철미

요즘, 이태원 사장에게 회사를 맡기고 스트레스가 없어졌다고 한다. "건설 시공기술은 신뢰성 있는 생산기술과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과학적 관리기술을 통한 공학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태원 사장이 워낙에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젊은 감각이 회사에 생기를 불러 일으켜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단다. 그래서 시간이 많아 덕분에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옛 친구들과 어울려 등산도 다니는 등 소소한 재미거리도 찾아 할 수 있다고 행복해 한다. 골프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소위 말하는 '싱글'이 되었다는 그의 비결은 바로 '철두철미' 힘에 있다고 한다. 원가 제대로 공이 맞지 않았을 때 다시 또다시 해보는 것이 그의 습관. 그런 '철두철미' 힘은 사업에까지 이어진다. 0.1mm의 오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깐깐함과 신중함. 그것이 삼지건설(주)은 한번 일을 맡기면 고객의 요구 사항을 넘어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이러한 철두철미함이 회사를 오래도록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이 아니었을까.



이태원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 덧붙이는 이야기

삼지건설 이소영 회장은 1992년 회사 설립과 함께 전문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이후 20여년 동안 토공,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을 보유한 국내의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체로 성장·발전시켰다.

그동안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두산위브더제니스(80층, 높이 300m)를 비롯하여 화성동탄 티볼리스(66층) 등 초고층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기반시설인 경북고속 철도, 부산울산 고속도로, 서울부산지하철, 광안대교, 인천대교 등 수많은 토목분야의 SOC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적 기업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토목,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해상분야와 함께 해외건설 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이제 세계시장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의 위상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우수한 인재발굴, 미래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소영 회장은 개인의 사재와 삼지건설 주식 30%를 출연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유능하면서 젊고 패기있는 이태원 대표이사를 파격적으로 선임하여 새로운 미래 전략 수립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조근조근한 그의 말투 속에는 배려가 담겨있다. 다른 시대를 살아온 인터뷰어가 혹시나 그 시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하나 찬찬히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이 보통 마음씀씀이가 아니다. 어려운 시대, 모든 것이 처음이고 시작이었던 1970년대부터 호황기와 불황기를 거쳐 오면서 대한민국을 건설해 온, 살아있는 역사의 장본인들. 그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 명실상부 전문건설업체의 선두주자, 삼지건설(주)

현존하는 국내 최고층 건물인 두산위브더제니스(80층), 동탄 메타폴리스(66층), 여의도 국제금융센터(54층), 세계 최대 백화점인 센텀신세계백화점 등은 (주)삼지건설의 기술력이 압축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경부고속철도,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지하철 및 부산지하철, 광안대교, 인천대교 등 국가기간산업 토목분야에도 삼지건설(주)의 손길이 달아있다.

지방의 업체가 수도권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시절에 서울지사를 설립하고 영업력을 확충해 수도권에서도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삼지건설(주)은 현재 대한민국의 글조회사 랭킹 3위 안에 드는 회사로 발전해왔으며, 건설 불황기에 오히려 높은 성장을 이루어 현재 2천억원에 육박하는 매출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삼지건설(주)이 최고의 전문건설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이소영 회장의 한결같은 신용과 뚝심, 배짱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노력과 훈이 담긴 삼지건설(주)이 이태원 사장의 젊은 감각을 만나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해본다.



## 六感(육감)을 이야기하다

한때, 칠면조 사육사업이 호황(?), 아니 유행(!) 할 때 칠면조를 키우던 남자,

요리조리 요리를 해봐도 니맛도 내맛도 없는 칠면조로 고군분투하던 그는 전국 호텔, 레스토랑에 칠면조를 공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장벽을 만났다. 쉽게 목표가 수정될 수도 있지만 그는 목표를 변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대안에서 길을 모색하다, 이때 다른 방법의 전략을 찾는 습관을 얻은 것이라 한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특정적인 맛도, 아무런 차별성도 없는 칠면조가 한남자의 인생을 바꾼 최초의 작은 계기가 되었다.

조금 더 차별되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창조적인 그 무엇을 찾아 혜매던 그는 다니던 포항제철을 밟고차고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떠난다. 국내에 없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며 미국의 아치형패널 공법을 국내에 도입 하여 그것에 새로운 것을 입히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하여 특허와 신기술을 개발해 15년 이상 앞선 기업들을 3년에 제치고 단번에 미국을

다시 찾아 새로운 공법의 사업을 논의하며 첫물 신념을 보였다.

## 기술을 건설하다

내가 만난 그는 진정한 애국자인가

기여와 봉사로 사회적 행복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미션으로 사업을 구상하다 지금까지의 사업과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새로운 도전을 유연하게 해낸다. 기름 한방울 안 나오고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사막화, 남극의 빙하가 녹는 등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들고 있고 지구의 기온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이 시점에서, 좀 더 기여 봉사 행복추구 미션에 다가설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 세계를 돌고, 자리산선사에서 연구원과 교수와 1박을 하고 목표를 정해서 돌아오게 된다.

전혀 생소한 분야라서 남들이 보면 겁먹을 수도 있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다.

도전은 그의 취미가 아닌가? 옳다는 판단이 든다면 스스로

없이 취미처럼 해나가는 자유분방함을 가진 것 같다.

지하나 화장실 같이 폐쇄된 죽은 공간에 인공조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태양빛을 전달해,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조명을 만들겠다는 가치조명의 이름을 만들고, 고생은 죽 먹는다는 생각으로 3년의 로드맵을 만들어 낸다. 3년을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구회의를 하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정신, 덕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3년 세월을 도둑맞은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사람.

그래서 요즈음 스스로를 봉이 김선달이라 부른단다. 대동 강물 끌어먹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궁무진한 것을 팔아먹는 재미가 솔 솔 난다나.

경주마리나 리조트가 무너졌을 때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라는 김병철 대표이사는 세계의 최고 기술로서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을 실현하지 못함에 아쉬워하며 지금도 건설과 IT를 결합하여 머지않아 새로운 것을 선보일 것이라 하니 강철근성으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벌일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득 안겨다 주었다.

## 아버지 같은 남자

그의 사무실에는 꽃이 많다. 평소에 꽂이든 풀이든 관심을 가질 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리고 주변지인들이 꽃나무를 많이 보내오나보다.

직원들의 부모님께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드리는 CEO. 화가 서회가, 조각가 등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예술가 후원, 가난한자를 돋는 구제구호 등 많은 층을 응원해주는 CEO.



45세의 늙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시작해 직원들의 살림살이도 면면히 함께 생각하며 기업의 사회책임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CEO.

어찌 존경스럽지 않은가. 나는 오늘 진정한 애국을 경험한다.

## 그 시대를 앞서 갈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다

감성경영, 오감(5感)보다 육감(6感)을 발휘해 나눔과 봉사로 타인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 메슬로우의 욕구단계(Need Hierarchy Theory)의 최고 단계인 자아실현단계에 도달해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하여 성장하는 그런 사람.

과연 그의 정년(停年)은 언제일까, 그의 정년이 오거나 할까?

이토록 정열적이고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신념이 나이라는 걸림돌로 무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악수를 청한다.

### 덧붙이는 이야기

김병철 대표는 1992년 아치패널이라는 미국의 금속지붕패널 시공기술을 국내로 도입하여 비교적 늙은 나이에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치패널 시공기술을 주로 공장, 창고 및 체육시설, 컨벤션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지붕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다. 2000년 이후부터 사업영역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하여 그린 흄 100만 호사업, 지역보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공장 창고 같은 건축물의 지붕 위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설치시공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많은 특허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연구에 주력하여 아치패널 뿐 아니라 다양한 금속재 지붕을 개발하고 그 구조물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보하여 기술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이미지를 확보해 가고 있으며, 특히 54개, 신기술 3개, 녹색기술 2개를 가지고 있는 건설 기술 강소기업으로 건설과 ICT 결합을 연구하고 있다.

# 13

## 건설산업정보

### PART 1.

####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개정 · 시행

##### 주계약자 공동도급 부계약자 탈퇴시 후속조치방안 등

기획재정부에서는 4월 1일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체건설업체 선정소요기간 등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자체상금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를 개정 ·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3호, 2014.4.1】

- ▣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주계약자가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

※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 또는 보증기관이 이행

- ▣ 공사감독관의 신분을 기술담당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우리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 · 지침 · 고시 · 통첩 ⇒ 국가계약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개정 · 공포

### “역량지수 평가”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22일 역량지수 평가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 · 공포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우리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기능사가 포함되었으며, 자격, 학력, 경력, 교육 분야별로 구분한 역량지수 평가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제도가 도입되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특급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 ▣ 건설기술자 인정범위(제4조, 별표1)

- 국가기술자격자(건축사, 기능장, 기능사)
  - ※ 우리협회 발급 인정기능사 포함
- 건설관련 학과 이수자
- 품질시험(검사)업무 수행자

#### ▣ 건설기술자 등급(별표1)

- “역량지수 평가”에 의해 건설기술자 등급(초·중·고·특급) 산정
- 자격(40점) + 학력(20점) + 경력(40점) + 교육(3점 가점) = 100(+3가점)

#### ▣ 건설기술자 교육 · 훈련(제42조, 별표3)

- 최초교육 이수시기는 건설기술자 업무 수행 개시 전
- 교육(기본, 전문) 이수시간 단축 : 3주 → 2주

#### ▣ 안전점검 실시 강화(제100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 2종 시설물 외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일반시설물도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안전점검 실시

# 13

## 건설산업정보

### PART 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 ▣ 건설기술자 신고 절차와 방법
-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절차와 방법
- ▣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승인 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

####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2014. 5. 22】

- ▣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에 건축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포함
- ▣ 건설기술자 등급의 역량지수 평가하여 산출

##### • 등급별 점수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5이상~55미만	55이상~65미만	65이상~75미만	75이상

##### • 역량지수 평가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교육지수	계
40점이내	20점이내	40점이내	3점이내 가점	100 (+3점)

##### • 세부항목별 배점

자격지수	학력지수(건설관련학과)	경력지수	교육지수
기술사(건축사) 40	학사 이상 20	(logN/log40)	
기사(기능장) 30	전문(3년제) 19	×100×0.4	
산업기사 20	전문(2년제) 18		
기능사 15	고졸 15	N : 경력을 365로	
기타 10	교육과정 이수 12	나눈값	35시간마다 1점 가산
	고졸 미만 10		(최대 3점)

※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자격지수 10점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 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지급보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담대)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지급보증토록 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토록 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음의 경우 만기일까지 지급보증토록 하는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2709호, 2014. 5. 28】



####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적용대상 명확화

-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 (1)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보증
- (2)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시 만기일(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
- (3)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시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보증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 청구 불가

####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비용(경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 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해외 대형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행위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6월 30일 하도급업체와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대형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시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외 현장이라도 국내업체간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특정 보증기관 지정, 선급금 정산방식, 현지법인 설립 강요금지 등 해외건설업 특유의 불공정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발주자 설계변경 시 백투백(Back-to-back) 조항을 보완, 유보금 조항은 삭제됐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13

## 건설산업정보

### PART 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

##### 산업재해 발생보고 변경 관련 해석지침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전문건설업체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으로 보여 회원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시 제출서류가 요양급여 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로 단일화되어 보고업무를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보고태만이나 은폐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판단기준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 Q&A를 회원사에 안내하고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관련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령 제99호, 2014. 7. 1】

######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 산업재해 발생시 제출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또는 우편 및 팩스 접수
  - 웹사이트([www.moel.go.kr](http://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또는 파일 첨부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자세한 내용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일부개정 · 시행

### 3억 ~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시 최근5년 시공실적으로 평가

안전행정부에서는 8월 5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고 공사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 시행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 계약예규 주요개정내용

【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및 제103호, 2014.7.31.】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재해율이 낮은 업체의 가산점 부여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2.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 5년)  
※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억원 미만은 현행유지)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4.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산정 근거 공개
5. 공동계약제도 운영 방식 개선
  - 지역의무공동 도급 시 계열회사 범위 명확화
  - 지역의무공동 도급 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개선
  - 공동도급제도의 지분 변경 명확화
6. 공사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확대
  - 최저가낙찰제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제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동일하게 실적공사비를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13

## 건설산업정보

### PART 1.

####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안) 개정·시행

##### 단가계약제도 적용으로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진다.

안전행정부에서는 8월 5일 8 ~ 9월에 집중되는 수해 및 태풍, 봉고, 전염병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위하여 단가계약 방식으로 재해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절차를 실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사업자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복구기간을 2 ~ 3개월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 단가계약 절차

###### • 일반계약



아울러, 기존에 활용되던 개산계약 및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만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개산계약 절차

###### • 일반계약



###### • 개산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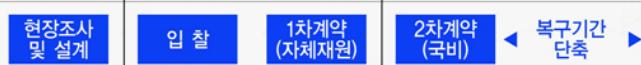
또한, 차수계약은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자체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 후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빠른 시공을 할 수 있어 그만큼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차수계약 절차

###### • 일반계약



###### • 차수계약



※ 자세한 내용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기타법령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시행

### 공공기관 입찰비리땐 계약업무 2년간 조달청 위탁 퇴직임원 법인과 수의계약 금지

기획재정부에서 8월 26일 공공기관에서 입찰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 ·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 · 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리자가 사장이면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급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도 금지하고, 해당 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은 감사원에 통지하기로 했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31호, 2014.8.26.】

#### 1.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과 수의 계약 금지  
(퇴직일로부터 2년간)
  - 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뢰, 횡령 등 비리 발생시, 비리관련 계약업무 2년간 조달청에 위탁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 · 지침 · 고시 · 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시행

### 실적기준 '낮추고'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조달청은 중소건설기업의 수주난 해소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이 5배(5년) 수준에서 3배(5년) ~ 0.5배(5년)로 완화돼 중소건설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대폭 확대됐으며, 금액별로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 배(5년)에서 0.5배(5년)로 완화된 것을 비롯해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은 2배(5년)→1배(5년)로,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은 2배(3년)→2배(5년)로,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은 5배(5년)→3배(5년)로 변경됐다.

또한, 50억 이상 종합공사 하도급관리계획의 하도급비율항목 평가시 지역 업체(광역시도) 하도급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1점 가점이 주어지며,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해주는 공사대상이 기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토목, 건축공사로 한정됐으나, 지원대상 범위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을 비롯해 전기, 통신, 소방공사 까지로 확대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3

## 건설산업정보

### PART 1.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조달청 시설종괄과-4928호, 2014.8.19】



##### 1.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3억 ~ 10억미만 : 1배(5년) → 0.5배(5년)
- 10억 ~ 50억미만 : 2배(5년) → 1배(5년)
- 50억 ~ 100억미만 : 2배(3년) → 2배(5년)
- 100억 ~ 300억미만 : 5배(5년) → 3배(5년)

##### 2. 지역업체 하도급참여시 가점 부여

- 50억이상 종합공사 하도급관리계획의 하도급비율항목 평가시 지역 업체(광역시도) 하도급 비율 20%이상인 경우 1점 가점  
– 다만, 하도급비율 항목 배점범위내 가점 부여

##### 3. 여성기업 등에 대한 경영상태평가시 우대 확대

###### 〈여성기업 가점 확대〉

- 50억원미만 토목·건축공사 → 50억원미만 토목·건축공사 +  
10억원미만 전문, 전기, 통신, 소방공사까지 확대



######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가점 신설〉

- 10억원미만 토목·건축·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이상시 공동수급체 전체의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 가산

##### 4.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 제외대상 확대

- 단독참여 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독점규제법에 따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추가  
※ 시행일 : 2014. 9.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개정 주요내용

【조달청 시설종괄과-4928호, 2014.8.19】

##### 1. 불공정행위 금지규정 신설

- 금품, 향응제공, 담합, 하도급자의 계약상이익 부당제한행위 등 금지  
※ 시행일 : 2014. 9.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시행

###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29일자로 건설업 등록유지를 위한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 시행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대폭확대와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이 전입지 등록관청 신고로 변경됐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 2014. 9. 29】



#### ▣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별지2 기업진단지침)

-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
- 매출채권 인정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
- 공사대금 대물 수령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인정
- 자기소유 본사건물 임대시 자본금 인정

#### ▣ 행정제재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제7장제3호)

- 시정명령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 ▣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제6장제3호)

- 등록말소·폐업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3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 ▣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제4장제2호나목)

- 전출지 등록관청 → 전입지 등록관청  
※ 시행일 : 2014. 9. 29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 · 지침 · 고시 · 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힐링 솜씨 **붓글씨**(주)거촌건설 대표이사  
**이상록**

-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 사)한국서화협회 추천작가
- 전국 관설당 서예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서예부문 입선
- 대한민국 서화 예술 비엔날레 대회장상
- 국제 창작미술초대전 특별상
- 한국 추사서예가 협회 초대작가

02 힐링 캠프 **전라남도 가을여행 추천여행지****\*장성의 백암산**

첫번째로는 애기단풍이 유명한 장성의 백암산입니다.

오래된 벚꽃나무와 단풍나무들이 다소곳이 줄지어 서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곳! 백암산에는 애기단풍이 고운 백양사가 있습니다.

이곳의 쌍계루는 백양사 단풍을 가장 잘 볼수 있는 명소중 한곳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에 둘러싸인 단아한 자태와 백암산 중턱에 우뚝 솟아 있는 백학봉의 멋진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가히 절경으로 꼽힌다고 하니, 올 가을 단풍구경은 장성이 딱일듯 같습니다.





自 靜 其 心 延 壽 命 無 求 於 物 長 精 神  
자 정 기 심 연 수 명 무 구 어 물 장 정 신

스스로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면 수명이 길어지고  
집요하게 물질을 추구하지 말아야 정신이 맑고 높아지리



###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두번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길!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입니다.

이국적인 전국 제일의 가로수 길인 이곳은 산림청과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 운동본부가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한 곳이기도 하답니다.

가을여행지에서 데이트분위기를 물씬 내고싶으시다면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추천합니다.



### \*순천만

다음은 갈대밭으로 유명한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은 광활한 갯벌과 드넓은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보고이며, 연안습지로서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입니다.

천문대, 선상체험, 갈대열차, 용산전망대, 순천문화관도 체험할 수 있는곳이라 관람객들의 호응도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순천만에 가시면 가을정취를 가장 잘 느껴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건설산업정보

### PART 2.

#### 2013년도 건설공사 실적 확정

우리시회는 7월 1일 정부·공공공사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에 적용할 전년 대비 5.9%증가(2,742억원)한 2013년도 전문건설공사실적을 확정 공시하였고, 올 하반기부터 발주되는 적격심사시 적용되는 2013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평균비율(7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확정 고시되었음을 안내하였다.

#### ▣ 2013년말 기준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구 分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조적	석 공	도 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부채비율	78.24%	99.14%	93.39%	81.84%	84.79%	111.54%	89.6%
유동비율	140.4%	141.61%	118.22%	153.39%	125.13%	120.02%	141.68%

구 分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설비	보링·그리우팅	철도·궤도	포 장	수 중
부채비율	108.46%	83.84%	82.65%	114.61%	119.6%	80.55%	70.86%
유동비율	108.22%	175.12%	190.89%	146.5%	135.52%	188.93%	164.56%

구 分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비	강구조물	철강재	식도설치	준 설	승강기
부채비율	131.69%	77.86%	140.99%	158.52%	201.63%	150.64%	135.39%
유동비율	143.72%	156.22%	111.93%	117.15%	61.07%	134.71%	138.4%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4.14%	-	6.4%	-

※ 적용기간 : 2014년도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공시전까지 사용

전문건설업종 부채비율은 평균 109.33%로 전년대비 3.04%포인트 증가했고, 유동비율은 평균 138.73%로 6.16%포인트 올랐다.

업종별 부채비율은 수중이 70.86%로 가장 낮았고 삽도가 201.63%로 가장 높았으며, 100%를 넘는 곳이 10개 업종이다. 전년대비 감소한 업종이 7개로 나타난 가운데 지붕판금·건축물조립(-39.63%), 철도궤도(-32.23%)는 크게 낮았다. 반면 삽도(31.41%)와 승강기설치(30.41%)는 급등하였다.

유동비율은 상하수도가 190.89%로 가장 높았고, 삽도가 61.07%로 가장 낮았으며, 전년대비 14개 업종의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상하수도설비(32.50%), 조경시설물(24.93%), 포장(23.10%)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 · 공시

2014년 7월 31일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관련 제증명(시공능력평가확인서,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시공능력확인서)의 발급 및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안내하였다.

우리시회는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하고 1,493개사이며, 코스카 홈페이지([www.kosca.or.kr](http://www.kosca.or.kr))에 공시하였다.

업체별 공시내용은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업종별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2013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보유기술자 수 이다.

## 화약사용자에 대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비 폐지

### 경찰청 총포 · 화약안전기술협회 정관 개정



건설공사 화약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던 총포 · 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 납부가 5월 1일부터 폐지됐다.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화약 제조업자 및 화약류 사용자 등에 대해 총포 · 화약안전기술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조 · 판매 업자 뿐만 아니라 화약 사용자에 대해서도 회비를 부과(화약류 사용량 1kg당 5원)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불편 등을 위해 화약을 사용하는 경우 회비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자는 화약 사용이 본업이 아니라 공사특성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화약을 사용하고 있어 화약협회 정관이 정하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화약협회는 재원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회비를 부과해 터널, 댐 등의 건설공사 시공을 위해 화약을 사용하는 토공사업 및 건축물을 폭파 · 해체하는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체는 사용량에 따라 연간 수백, 수천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경찰청, 규제위 등 관계요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찰청이 총포 · 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화약 사용자에 대한 회비 납부 규정을 폐지했다.

## 건설산업정보

### PART 2.



#### 건설현장 안전체계 강화

##### 국토교통부, 세월호 참사 계기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안전점검 전면 실시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26일간 교량, 터널, 댐 등 사회기반시설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장마·태풍 등에 대비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전면 실시했다.

이에 우리사회는 5월 16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의 근절을 위해 현장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조치하여 정부의 안전점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에 안내하였으며, 평소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모나 각종 안전장비, 보호구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업주가 보호구 미지급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

※ 사업주가 보호구 미지급하여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6조의2)



-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시 : 과태료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72조제5항제2호, 동법 시행령 별표13)

#### 중장비에 의한 전기 안전사고 및 정전예방 안내

##### 전력선 근접 작업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해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정전없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보수 및 안전점검 등 각종 정전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전력설비는 외부에 노출되어 일반인의 안전 부주의 또는 사소한 실수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사다리차 혹은 크레인을 이용한 이삿짐·화물운반·옥외 광고 설치 및 전력설비 인근 공사현장 작업 중 전력선에 근접하여 감전사고 및 정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안내했다.

전력선은 피복된 전선일지라도 근접 또는 접촉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력선 근접작업시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며, 반드시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이울러 전력선 전압별 안전이격거리 미확보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71조에 의거 형사적 조치가 따르며, 정전 및 전력설비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0조에 의한 형사조치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 가공 전력선 전압별 안전이격거리

구 분	22.9kV(이하) 배전선로	154kV 송전선로	345kV 송전선로	765kV 송전선로
권장사항	3m 이상	4.8m 이상	7.65m 이상	13.95m 이상
법적사항	3m 이상	3.4m 이상	4.5m 이상	6.9m 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철저 안내

### 해체공사계획서에 의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철저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철거공사 중 화재·폭발·붕괴사고 빈번히 발생

우리시회는 6월 12일 건축물 해체공사시 해체공사계획서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철거·멸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해체·철거공사시 공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최근 건축물의 증·개축 및 철거공사 과정에서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장 내 작업자는 물론 주변 시설물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체공사계획서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현장관리 철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멸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주 : 과태료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 회원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안내

우리시회는 7월 9일 최근 상용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오토데스크 인코포레이티드(Autodesk Inc, 저작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제반 법률적 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우리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시 사용하는 도면작성 프로그램(AutoCAD 등)의 사용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회원사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 현황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무단사용 근절을 당부했다.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권 라이센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24조에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동법 제136조 제2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설산업정보

### PART 2.

#### 2015년도 최저임금 고시 안내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현행 시급 5,210원에서 2015년 시급 5,580원으로 370원(7.1%) 인상하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9호, 2014.8.4.)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비탈면 보강공, 유리알 살포량 등 일부 개정**

우리시회는 8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표준품셈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공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지장을 철거공사를 이미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실제 시공사가 아닌 “청O개발”이라는 업체가 실제 시공사인 듯 하도급사를 모집하고 있어 관련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을 철거공사 1~3공구에는 “청O개발”과 계약체결한 건이 없으며, 허위 업체가 동 사업지구 철거공사의 하도급 모집 명목으로 여러업체를 접촉함에 따라 해당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동 철거공사는 전문공사(비계·구조물 해체공사)로써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한 공사이다.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동 공사의 시공업체 명단을 안내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1공구 : (주)정호이앤씨, (주)옥당산업

※ 2공구 : 재호건설(주), 청도건설(주)

※ 3공구 : (주)하이테크알파, 한국파이프기연공업(주)

## 2014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결과 안내

**2014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전분기 대비 4.8%하락  
3분기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KOSCA 중앙회는 시·도회 모니터(308명)를 활용하여 분기별 전문건설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번 실시한 2014. 2분기 전문건설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설문지를 배포한 308개사 중 72개사(유효회수율: 23.4%)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2/4분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조사 결과 2014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분기 대비 4.8% 하락한 57.7%로 조사되었고, 3분기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7%)'와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6%)'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혔으며, '민간투자활성화(7%)'와 '부동산규제완화(0%)'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8%)'과 '인력난·인건비 상승(15%)', '경쟁심화(16%)', '자금부족(11%)'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되었다.

자금사정지수는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1분기보다 더욱 하락했고, 여기에 자금조달 방법에서 '대표자 개인자금(59%)'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건설산업 통계·요율 → 건설업 통계 "2014.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결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실사 가능한 현장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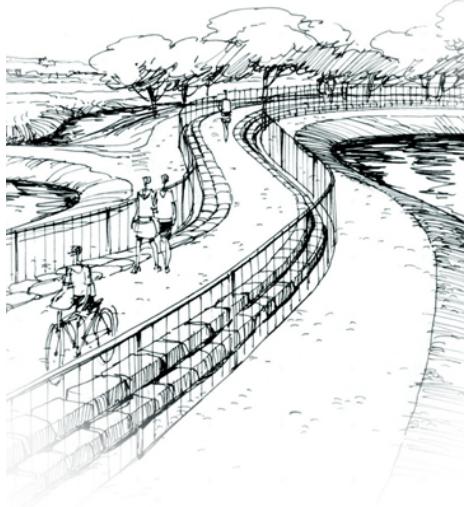
**회원사 실사 가능한 현장 추천 없어...**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품셈에서 불합리한 항목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품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심의위원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거쳐 최종 개정·확정 된다.

이에 우리협회는 건설공사 품의 하락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 개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품셈 개정을 위한 실사 가능한 현장 추천이 없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회는 회원사에 매년 상·하반기 표준품셈 개정 항목에 대한 실사 가능한 현장을 적극 추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현재 시공 중이거나 시공이 완료된 건설공사에서 품이 낮아 불합리한 항목이나, 품셈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등이 있을 경우 시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 건설산업정보

### PART 2.



####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올 상반기 대비 평균 1.1% 상승

우리시회는 9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의 시스템동바리 및 고름모르타르 등 7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968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산출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평균 1.1% 상승했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1.0%, 건축공사 1.3%, 기계설비공사는 1.3%씩 각각 올랐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가 0.4% 오르고, 노임지수 1.2%, 토목·건축부문 공사비지수가 1.1% 상승한 탓에 실적공사비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실적공사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실적공사비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 하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3.4% 상승

155,796원...일반직종 147,352원

우리시회는 9월 5일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9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 적용된다.

올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임금이 상반기에 비해 3.4% 오른 15만5796 원으로 나타났다.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반장 10만9,664원 △보통인부 8만6,686원 △특별인부 10만6,569원 △비계공 15만3,958원 △형틀목공 14만3,562원 △철근공 13만7,204 원 △콘크리트공 13만1,474원 △포장공 11만7,562원 △조적공 11만9,163원 △건축목공 13만3,609원 △방수공 9만8,523원 △미장공 13만5,353원 △타일공 13만2,287원 △배관공(수도) 13만7,091원 △건설기계운전사 12만1,654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임금실태에서 확인 가능하다.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01**

9월 2일 오후 중앙회 표재석 회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사회인프라 사업인 건설안전, 생활형 SOC의 예산확대를 건의한 결과 경제부총리가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음.

**02**

중앙회 표재석 회장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를 위하여 의원입법, 관계장관 간담회, 정부요로에 건의문 전달 등 강력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국회 기재위·안행위 관련 소위에 동 개선 법안이 계류중에 있고, 정부에서도 제도개선TF를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다양한 시장가격을 활용한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는 방안(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 예고: 2014.9.24.)도 추진하고 있어 금년말까지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사회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	주요행사명
2014.10.27 (월)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 간담회
2014.11.3 (월) ~ 7(금)	각 구(군)청장 간담회
2014.11.6 (목)	2014 사랑나눔음악회
2014.11.12 (수)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장 간담회
2014.11.21 (금)	부산전문건설인 단합 산행
2014.11.23(일) ~ 24(월)	전건회 국내원정(제주도)
2014.12.26 (금)	전건회 12월 월례회





## 유권해석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보증금 액수수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계약 보증수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감시제어 및 계장설비제작 설치공사를 '97.11.17일 계약을 하고(납기:1999.12.31)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을 제출하였습니다.

1998년 수요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납기가 2000.11.30.일로 연기되어, 당초 조달청에 제출되었던 보증보험을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수수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계약 보증수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 기준」(현행「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함.

## 【근거】

기획재정부 회제 41301-133(1999.1.15.)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에 대한 압류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가능 여부?**

##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이행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고, 그 후 신규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대금에 대한 하도급 직불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 및 하도급 직불 가능성 여부?

## 【회신내용】

공동계약은 2인이 이상이 당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발주관서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 바, 공동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가 되는 것이며,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도 공동수급체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대금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 않다고 볼 것임.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근거】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825(2009.11.04.)

## 건설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8755 판결[계약보증금청구]**

## 【판시사항】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 특약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43조, 제5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공1989, 796)

**【원고, 파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불꽃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0. 선고 2011나9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도급인인 원고와 수급인인 성실 건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계약이행보증을 한 사실, ② 위 도급계약에서 '성실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고, 성실건설과 피고 사이의 보증위탁계약에서는 '원고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 ③ 성실건설은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에 공사포기에 따른 타절정 산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정산합의로써 원고와 성실건설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해제 당시 원고는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유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하지 않고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위탁 계약의 내용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는 성실 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 무에 대한 보증채무라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공사포기 및 정산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정산합의의 내용,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은 원고가 약정해지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심 판단과 같이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지에도 불구하고 성실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성실건설 이전의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었던 조일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점, 성실건설이 원고 외의 다른 공사의 도급인들과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에도 그 도급인들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명확히 약정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약정한 공사기간보다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할 당시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고 유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와 조일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나 성실건설과 다른 제3자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및 정산 내용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 당시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에 있었던 정산약정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성실건설의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성실건설의 공사포기 및 정산합의 이후의 현장 인수 과정 및 공사 진행 경과 등을 함께 감안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도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유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합의해지 당시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계약의 합의해제 · 해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회원사 질의·응답

### 1. 공사미착공 사유(민원보상)에 따른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여부?

- 갑의 귀책사유로 전체공사기간의 50%이상이 지연됐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함. 그러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불 이행 책임이 있어 원도급사가 계약금액의 10%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책임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음.

### 2. 당초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금속재공사로 하도급 받아 시공해 왔으나, 철재를 세우기 위한 기초콘크리트공사를 추가하도급 받은 경우에 다른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재하도급승낙서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전체하도급공사 금액 20%이내의 경우 가능함

### 3.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실적 등 평가기준일은?

- 2013년 건설공사 실적은 2014. 7. 1일 확정되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서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원도급사 부도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도급사가 부도가 난 경우로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가 가능함.  
※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매회 기성청구 금액을 특정한 후 원도급사로부터 확인(기명날인) 받아 두어야 함.

### 5. 원청사(A, B, C)가 공동도급 받은 도급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B)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A, C)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또한 해당 공사 타절시 간접경비 청구 가능 여부?

- 공동수급체 상호간에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채무가 있음. 또한 공사중지는 가능하나 계약해지는 어려움이 있음.
- 계약해지 · 해제에 따른 간접경비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경비 청구가 가능하나, 하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6. 건설업 등록말소 이후 계약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건설업 무등록 시공은 불법시공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는 발급하지 않음.

### 7. 건설업 무등록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은 얼마인가?

- 건설업 무등록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은 1천5백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나, 가스시설, 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 삽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음.





## 8. 선금금 지급대상 공사의 범위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서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않으며,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선금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설공사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9.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시 실적인정 기간은?

-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평가토록 안전행정부에서 2014. 8. 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시행됨.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현행대로 최근 3년 이상 실적으로 평가됨.

## 10. 화약사용자에 대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 회비 폐지 이전에 부과된 회비는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최근 경찰청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2014. 5. 1일부터 화약 사용자에 대한 회비 부과가 폐지되었음.
- 그러나 2014. 5. 1일 이전에 부과된 회비는 소급적용 되지 않으며, 기존에 부과된 회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함.

## 11. 영업정지 기간중에 민간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영업정지 기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영업정지 기간중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됨.
- 그러나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그 이후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시에는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한해서 시공이 가능함.

## 12.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도급 준 발주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 무등록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13. 기존 시행중인 조경유지관리공사에 배치된 현장배치기술자를 타 건설현장에 중복배치 가능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배치 가능함.

## 14. 아파트 재도장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 가능한지 여부?

- 아파트 재도장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업체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5.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공사를 하도급 받을 경우 건설공사대장 통보 방법은?

-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공사의 경우에 해당 시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님. 그러나 상기 업체와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원도급이 성립되므로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

## 특별기고



이 학 기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건설혁신을 가로막는 고정관념

중국 송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린이들이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올라가 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아이가 그만 큰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사람을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어른들이 모두 일터에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들끼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 때 한 아이가 큰 돌을 집어 항아리를 힘차게 내려쳤다. 그 큰 항아리가 깨지자 그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항아리 속에 빠졌던 어린이는 쉽게 나올 수 있었다. 큰 항아리에 돌을 집어 던졌던 아이가 나중에 송나라의 유명한 대학자가 된 사마광이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한다면 그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과거의 고정관념이 성장을 저해

고정관념(fixed idea)은 '본의가 아님에도 마음이 어떤 대상에 쏠려 끊임없이 의식을 지배하며, 모든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관념'을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들을 살펴보면,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부정적 사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복지부동),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지나친 보수주의), "구관이 명관이다"(과거 회귀), "얼마나 가나 봐라"(불신주의), "중간만 가면 돼"(평균주의) 등이 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건설산업도 이제 과거의 고정관념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와 혁신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물적 가치가 컸지만 탈산업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지적 가치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건설산업이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 건설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고정관념들

그렇다면 건설산업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건설산업의 문화적 풍토와 인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건설은 경험과 배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경험과 배짱이 최고이다', '사장의 얼굴이 중요하고, 인맥과의 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종전의 건설생산은 현장작업 중심의 수주에 의한 단순 일품생산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화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의 생산은 첨단 기술과 공법 등의 생산기술과 시스템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순 경험, 육감, 배짱이 우선되고, 인맥과 의리를 앞세운 수주활동이 팽배하는 등의 고정관념에 젖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력보다는 외형 위주의 성장에 집중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실제 건설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눈에는 건설은 단순 경험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맥과 의리에 의해 수주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법을 바로 잡아야 건설이 산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사업의 성공은 시공능력에 달려있다. 시공자의 능력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진화된 건설 생산체계에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품질성능 등의 프로젝트 기준을 포함한 제반 생산체계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와 발주자와 생산자 사이의 계약사항에 의해 제한된다.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 사업에서는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해결하려 한다. 법과 제도의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성공은 시공단계의 기술능력에 좌우된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하다.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의 초기단계인 기획 및 설계단계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를 통한 최적화관리가 사업의 성공과 직결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 설계, 시공의 유기적 연계성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건설사업은 발주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에서 수행되는 생산과정임을 전제로 할 때 건설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자인 시공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발주자의 역량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기술직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기술력 향상 없이 공공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힘들지 모른다.

###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서야...

건설산업은 이제 과거의 주먹구구식 경영이나 낡은 경험, 그리고 단순 기술력에 의존하는 고정관념으로는 시스템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만족할 수 없으며, 격심한 경쟁 시장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건설산업의 변화와 혁신은 고정관념의 과감한 탈피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 특별기고



박 민 용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교수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10년을 넘기면서...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sup>1)</sup> 설치의무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m<sup>2</sup>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 설치의무화 제도의 변천사

우선, 이 제도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됐다. 최초 시행은 2004년 3월 29일이며 신축으로 국한되다가 2009년 3월15일 증·개축으로 확대 시행됐다. 2008년 9월 10일부터 공공기관내 학교시설을 포함하였으며, 2011년 4월13일부터는 의무설치량을 총 건축 공사비의 5% 이상의 비용에서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으로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을 강화하였다.(초창기의 건축비용에 대한 의무화 설치기준은 전례에 보기 드문 무지막지한 제도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 다행이었다. 휴~)

2011년 4월13일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연면적 1,000m<sup>2</sup>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제도”가 시행되었다.

2012년 1월1일부터는 연면적 3,000m<sup>2</sup>에서 1,000m<sup>2</sup>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됐으며 올해 2014년부터 공급의무비율이 12%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2014년 4월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공급의무비율이 엄청 확대되었다. 기준 △2015년 13% △2016년 14% △2017년 15% △2018년 16% △2019년 18% △2020년 20%였던 비율이 △2015년 15%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30%로 확대변경되었다.(사실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현황 및 사례

다음으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를 통해 보급된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설치현황을 살펴보자.

첫 번째, 설치기준을 설치비용으로 산정했던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설치현황 결과 태양 광시스템이 53.7%, 지열 42.1%, 태양열 3.3%로 태양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설치기준을 설치비용으로 볼 때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량(2004년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의 기준)을 TOE<sup>2)</sup>로 환산해 보면 지열시스템이 71.6%, 태양광 26.1%, 태양열 2.0%로 지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3)</sup>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공사비용으로 설치하던 시절은 태양광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설비용량으로 환산하고 에너지사용량으로 설치하는 시절은 지열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사실 “신·재생에너지”的 용어가 탄생하기 전의 원조 용어는 “대체에너지”였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시작했던 이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부족했던지 하여튼 정부는 2005년 7월 1일 이후 명칭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 TOE(Ton of Oil Equivalent):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ITOE는 1000만kcal의 열량을 말한다.

3) 신재생열에너지간 ‘회비’ 엇갈려, 투데이에너지, 2014.06.20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11개 분야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적용하는 분야는 한정적이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의무화 비율이 엄청 높아져가는 시점에서, 초고층화 되는 건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을 선택 적용하기에 풍하중이나 세장비 등의 바닥면적의 한계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운신의 폭이 적어지게 된다.

얼마 전에 준공된 부산문현금융센타 건물의 경우 초기 설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열시스템의 용량 200RT를 건물 바닥면적에 최대한 설치하고, 건물의 남측유리창에 건물일체형태양광 발전(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시스템을 전면 부착하여 최대용량 300kW를 도입하였지만 결국, 건축물의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마지막 카드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원은 대용량 300kW의 연료전지 시스템이었다. 그 당시 건물에 100kW 이상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큰 모험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무리하게 설치된 건물 남면 유리창에 설치할 BIPV 방식을 제거하고 지열시스템을 최대한 빽빽하게 증설하여 350RT로 하였으며, 옥상에 구조를 최대한 보강하여 태양광발전 고정식 50kW 시스템으로 신설하였으나, 연료전지 시스템 300kW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신에너지로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생성물이 전기와 순수(純水)인 발전효율 30~40%, 열효율 40% 이상으로 총70~80%의 효율을 갖는 신기술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화석연료인 도시가스를 소멸하여 신에너지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300kW 연료전지 시스템은 효율이 93%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생산량은 537toe이고, 도시가스 에너지소비량은 577toe로서 에너지획득이 아닌 에너지손실 40toe가 발생하므로 에너지 손실시스템이다. 이렇게 에너지손실이 발생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만한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설비는 없는 상황이다.

### 융합형태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

따라서 극히 한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것만이 우선이고 최고라는 인식의 정책에서 벗어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과 에너지절약 시스템과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과 국가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수단별 기여도 전망(2005~2050)에서 밝힌 것처럼 에너지절약 36%, 신·재생에너지 21%로 2개 분야가 약 60%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차지하므로 에너지절약정책 홀로서기 신·재생에너지정책 홀로서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것만이 우선이고 최고라는 인식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설비의 범위를 넓혀 에너지 융합형태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인정하고 도입함으로서 에너지절약정책의 테두리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존과 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체결

노무법인 부산삼신  
대표 공인노무사 **여찬모**



### 들어가며

고용노동부는 2012.1.1부터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전체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체결율은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협회의 회원사들과 같이 일일고용형태의 현장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약 4.4%(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참조)정도에 이를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제까지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하여 적발 시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2014년 8월 1일부터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근로자의 진정, 고발에 의거하여 이를 입건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바,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서면 미체결이 협회 회원들에게 큰 노무관리상 리스크로 다가올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의 주요 이슈

#### 1.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및 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별첨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종전) 위반시 14일이내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변경) 미작성시 즉시 과태료

상기와 같이 과거에는 근로계약서 위반시 시정기간을 주었으나, 이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일용직근로자(직영, 용역 불문)로서 회사에 소속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들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2. 근로계약서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근로계약서 미체결시 과태료의 부과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부과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2항제2호	50 (서면명시 사항 1개 호 당)	200 (서면명시 사항 1개 호 당)	200 (서면명시 사항 1개 호 당)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 (서면명시 사항 1개 호 당)	120 (서면명시 사항 1개 호 당)	120 (서면명시 사항 1개 호 당)

## 3. 노동부의 주요 점검사업장

현재 고용노동부는 2014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선 ①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② 미용실 ③ 주유소 ④ 음식점 ⑤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여부를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전속계약으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율보다, 용역업체를 통한 비상시적인 인력사용, 공종 및 공기에 따라 투입 인력의 변화가 빈번하고, 현장의 상황 및 근로자의 거부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체결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라 하여 특별히 다른 지침을 공표하지 않은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4. 근로계약 미체결시 예상문제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체결 한 경우, 미체결 건수(인당)당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이 당장의 인사노무관리상 리스크로 다가올 것은 당연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의 실사례를 보면, 최초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한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받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더니 사용자를 처벌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형사처벌(벌금형) 및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이 부담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경우도 있는 등,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용자를 고소, 고발한다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바, 향후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불측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 나오며

우리협회의 회원사들과 같이 건설일용직을 다수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지침”은 노무관리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침 및 규정적용에 있어 온정주의적태도에서 법과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는 태도로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와 같이 건설업의 특수성을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상참작을 받는 것은 이제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회원사 모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모든 근로관계에 있어 기준이 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법과 원칙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작성 보관 하는 것을 습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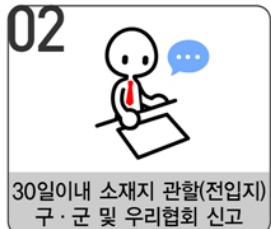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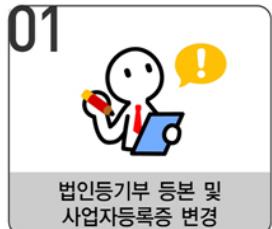
## 회원사 현황

## 부산전출·입업체 현황

&lt;5월 1일 ~ 9월 30일&gt;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누리웰조경개발(주) (대표 : 김상미, 울산)	(주)건양이엔지 (대표 : 김성용, 경남)
(주)다온아이디 (대표 : 남미영, 경기)	(주)광승이엔지 (대표 : 한경석, 제주)
(주)대정건설산업 (대표 : 정한별, 세종)	(주)금샘조경개발 (대표 : 김하영, 전남)
(주)마루건설 (대표 : 최재갑, 충남)	(주)대동이엔씨 (대표 : 박세만, 경북)
메트로건설(주) (대표 : 최상희, 경남)	레메코씨엔이(주) (대표 : 박순천, 경남)
(주)미당 (대표 : 강선미, 경기)	(주)명문 (대표 : 양빈, 경남)
범서토건(주) (대표 : 박호광, 경남)	(주)목전하우징 (대표 : 권기원, 서울)
부광토건(주) (대표 : 박영예, 경남)	(주)율댄동산 (대표 : 이현정, 경남)
벤엘건설(주) (대표 : 권병오, 경기)	(주)밀양토건 (대표 : 조정, 육경북)
비비씨산업개발(주) (대표 : 박통령, 서울)	방부건설(주) (대표 : 정경화, 경남)
(주)수로토목건설 (대표 : 박진백, 경남)	(주)부경디엔씨 (대표 : 이동학, 충북)
신원티엔씨(주) (대표 : 박광석, 경남)	(주)산자원 (대표 : 서창수, 경남)
(주)오색조경 (대표 : 권오준, 경북)	(주)삼위건설 (대표 : 임영대, 경남)
(주)우일인더스 (대표 : 박찬금, 인천)	(유)새천년건설 (대표 : 최재환, 경기)
(주)재도이엔씨 (대표 : 노창근, 경남)	(주)세웅개발 (대표 : 장옥남, 전남)
(주)정원조경 (대표 : 유창호, 경북)	(주)아원 (대표 : 임경신, 경남)
(주)정진지오개발 (대표 : 이미옥, 서울)	(주)웅비건설 (대표 : 박기한, 충남)
(주)제이엔씨환경 (대표 : 최미란, 강원)	(주)원덕건설 (대표 : 조문환, 경북)
(주)지구환경전문가건설 (대표 : 정정식, 경기)	(주)일동이엔지 (대표 : 전창환, 경기)
포스코칼라강판(주) (대표 :김장동, 경북)	(주)제일목재산업 (대표 : 박상숙, 경남)
피큐건설(주) (대표 : 김종철, 제주)	(주)초록종합건설 (대표 : 홍의야, 울산)
해룩개발(주) (대표 : 강용수, 경남)	(주)탄성 (대표 : 김필순, 경남)
	(주)태황건설 (대표 : 김장환, 전남)
	한동건설(주) (대표 : 전용봉, 경남)
	해룩개발(주) (대표 : 강용수,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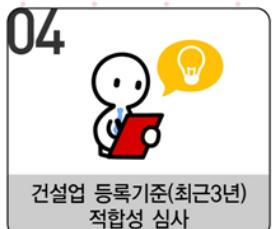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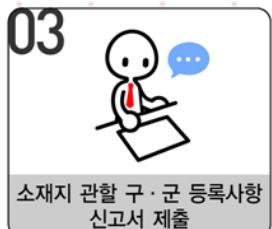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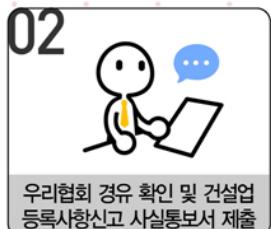


기재사항  
변경

## 〈제출서류〉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임 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전화·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이 변경되면 우리협회 회원관리과(051-633-026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 → 건설업 등록 · 관리 → 건설업 변경사항 신고]

주기적  
갱신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  
(최근 3년간)
- 건설기술자(기능사)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  
증사본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
- 건물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장비 및 선박보유 등록증 및 보유내역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 협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 → 건설업 등록 · 관리 → 주기적(갱신) 신고]

# 23

## 신규 회원가입업체 소개

상호(대표자)	주소	상호(대표자)	주소
 구암건설(주) 이상재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822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b>T : 051-807-0422</b>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금강가구(주) 김정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방곡5로 24-3  <b>T : 051-728-7664</b>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대신산업개발 박성열	부산 사상구 괘감로 37, 14동 207호 (괘법동,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b>T : 051-319-4345</b>  보유업종 :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	 (주)대한그린에너지 박근식	부산 남구 유엔로157번길 7 (대연동)  <b>T : 051-923-0887</b>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동국해양(주) 최영식	부산 수영구 수영로 721, 3층 (수영동, 수영리젠빌)  <b>T : 051-745-9050</b>  보유업종 : 수중	 (주)동일티앤씨 김기덕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717호 (우동, 선프라자)  <b>T : 051-731-3383</b>  보유업종 : 미장 · 방수 · 조적
 디에이치테크(주) 황소용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66번길 20 (화전동)  <b>T : 051-314-3321</b>  보유업종 : 상 · 하수도설비	 (주)모가비건설 성문경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6 103동 3225호 (범일동, 진흥마제스타워범일)  <b>T : 051-632-4196</b>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모아건설 정수호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88, 3층 (괴정동)  <b>T : 051-203-4404</b>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무광건설(주) 김삼수	부산 사상구 사상로75번길 15 (주례동, 도봉빌딩)  <b>T : 051-961-0020</b>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미래그린(주) 김문기	부산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34, 3층 (금곡동)  <b>T : 051-363-4442</b>  보유업종 : 조경식재	 (주)민지조경 윤성철	부산 영도구 산업로 23, 4층 (청학동, 일신빌딩)  <b>T : 051-412-3640</b>  보유업종 :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
 (주)백산건설 여운	부산 남구 용소로13번길 115 902호 (대연동, 선라이즈)  <b>T : 051-469-7881</b>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창호	 (주)벽송이엔지 김선미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407, 111호 (하단동, 웨일프라자)  <b>T : 051-292-5785</b>  보유업종 : 토공

상호(대표자)	주소	상호(대표자)	주소
 (주)부영건설 김정수	부산 동래구 미남로 106, 401 (온천동) <b>T : 051-505-8562</b>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부원지에프씨 이기봉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90, 상가동 405호 (우동, 센텀현대아파트) <b>T : 051-744-7412</b>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산울건설 송다남	부산 기장군 기장을 차성동로87번길 18~4(지하1층) <b>T : 051-928-7956</b> 보유업종 : 포장	 (주)산저건설 변영주	부산 수영구 수영로 759, 606호 (수영동, 알파오피스텔) <b>T : 051-761-1603</b> 보유업종 : 토공/철근·콘크리트
 삼미산업 김명숙	부산 강서구 공항로533번길 354-6 (대저2동, 4071-3,4,5) <b>T : 051-831-5981</b>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세웅개발 장옥남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39 902호 (수안동, 수안메디컬센터) <b>T : 051-337-8543</b>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송림건설(주) 경만호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132번길 34 5층 514호 (전포동, 서면해피투모로우오피스텔) <b>T : 051-515-4825</b>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신도개발 이상용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7 103호(명장동, 명선하이츠) <b>T : 051-526-3006</b>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주)신세계건설 박수연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17 2층 (재송동) <b>T : 051-863-9937</b>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현정중합조경 조진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복대로 60, 814호 (재송동, 센텀IS타워) <b>T : 051-757-5441</b> 보유업종 : 조경식재
 (주)이노텍코리아 김은정	부산 사하구 동매로 120, 304호 (하단동, 한신혜성상가) <b>T : 070-4010-2801</b>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주)창영엔크린 장동주	부산 강서구 제도로 983 (강동동) <b>T : 051-971-6205</b>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천풍조명 윤명현	부산 금정구 청룡로 47-1, 3층 (남산동) <b>T : 051-517-1780</b> 보유업종 : 조경식재	 청은환경산업(주) 주재형	부산 강서구 맥도강변길 914 (대저2동) <b>T : 051-972-2630</b>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주)호텔농심 서홍주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20번길 23 (온천동) <b>T : 051-550-2629</b> 보유업종 : 조경식재		

1. 갓난아기는 울어도 눈물이 없는 까닭?

\_ 아직 세상물정을 몰라서

2. 사람의 발바닥 가죽이 두꺼운 까닭?

\_ 인생은 가시밭길

3. 여자의 가장 큰 낭비는?

\_ 예쁜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것

4.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_ 동성동본이니까

5.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때는?

\_ 잠을 잘 때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들에게 화가 난 엄마가 꾸중을 했습니다.

"아니 넌 누굴 둘어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제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러자 아들은 미안한 기색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공부는 못했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됐어!!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

그러자 더 열 받은 엄마가 아들에게 소리쳤다.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잖아!!"

## 생활 속 웃긴 거짓말

**자리 양보받은 노인** - 에구..... 괜찮은데.....

**옷가게** - 어머 너무 잘어울려!! 손님을 위해서 만든 상품 같아요

**중국집** -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해요...

**장사꾼** - 이거 정말 밀지고 파는 건데

**수석합격자** -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했어요

**음주운전자** - 딱 한잔만 했어요

**연애인** - 그냥 친한 동료사이입니다

**학원광고** - 전원 취업 보장...전국 최고의 합격률

**사장** - 남는게 없어~~ 적자야 적자

**직원** -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치우고 만다

**시어머니** - 난 널 땀처럼 생각한다

**며느리** -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더 있다 가세요

**친구** -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연인** - 미안해, 사랑해

**남자** - 야한 거? 그런걸 왜 봐?

**여자** -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거짓말?! 노래 제목아냐?!  
거짓말을 해본적이 없어서...  
하하하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토사붕괴, 수몰 등 증가하고 있는 대형재해 중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적·재산적 피해액이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형 종합건설업체 중심으로 건설현장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모 또는 안전벨트를 미착용 하거나 안전 시설을 임의 해체하는 등 안전수칙 최초 위반시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재해 발생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공사의 종류별로 전체 산재사고 중 건축공事が 73.8%(328명), 토목공사가 21.6%(77명), 전기·정보통신공사가 5.1%(18명)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플랜트, 중·소형공장'과 '소규모(주택, 상가 등)'이 각각 57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 증가됐다. 이는 매년 산재사고가 증가되는 추세로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히다.

이에 우리사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2012년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1명이었으나 2013년은 516명으로 전년 대비 11.9%(55명 증가)가 더 많았고, 재해자 또한 2012년 22,603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22,409명으로 전년대비 0.9%(194명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비계해체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떨어져 사망			
공사명	마산현동0000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11.23(목) 9:45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공사규모	아파트
재해개요	2013. 11. 23. (토) 09:4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내 OO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마산현동 0000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주)OOOOO 소속 피해자(남, 비계공, 44세)가 107동 외벽비계 해체 작업 중 해체한 작업발판을 아래로 내리다가 발판과 함께 바닥(H=6.9m)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추락방지조치 준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구부 및 작업발판 단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 및 해당 작업 종료 전까지 유지하여야 함</li> </ul>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구부 및 작업발판 단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벨트 및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철저히 감독</li> </ul>



- 추락지점 상부 및 당시 작업상황 -



- 재해자 추락지점 -

# 코스카레터 창간호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이화기술단  
**나용민** 주임

예전에 협회에서 제작하던 신문을 보다가 이번에 책자로 만들어진 코스카레터를 보게되었습니다. 건설관련 정보내용이 많이 있어 책상 한켠에 두고 필요할때마다 자료를 찾아보기 쉽게 되어있어서 업무 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법령에 관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업무에 관한 정보도 좋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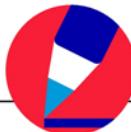


(주)은화  
**조대원** 과장

우선 코스카레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신 책자를 읽어보니 협회소식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정리가 잘되어 있어 많은 도움 및 참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소통하는 문화공간 등 전문분야를 벗어난 생활에 유익한 정보들도 함께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내용이나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들을 자세히 담아 주신다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을 축하드리며 많은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 독자퀴즈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 8월 5일자로 중·소 건설업자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당초 3년간 실적에서 5년간 실적으로 평가토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당초대로 3년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토록 현행 유지되었으나,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시공실적 인정기간이 몇 년으로 확대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2014. 11. 28(월)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